

『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행정기관과 민간단체, 관계분야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 하고, 위원회 기능·회의소집·의사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협력위원회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-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4조)
- 협력위원회 위원의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회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시 행정기관과 민간단체, 관계분야 전문가 등 민관 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